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1063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10. 30. 접수 제9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6. 3.경부터 ‘C병원’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9. 3.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에 따라 원고의 행정조사를 받은 뒤 2019. 4.경 수사에 의뢰된 사실, 그런데 B은 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0. 22. 동서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뒤, 2019. 10. 30.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9. 12.경 위 수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뒤, 2020. 3. 3. B에 대하여 6,620,435,070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B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4. 8. 13.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¹⁾ 및 이 사건 매매 당시 B이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동서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주장은 개진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

별지

1) B과 검사 쌍방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4노246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